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00
------	-----

2023.07.04.  
기획경제위원회

##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5월 30일, 김인제 의원(찬성자 15명)

나. 회부일자 : 2023년 6월 5일

다. 상정결과 :

### 【서울특별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 제7차 기획경제위원회(2023.7.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 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김인제 의원)

가. 제안이유

-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시기가 상

위법령인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상 각 지자체에서 수립·제출하도록 규정한 시기와 서로 달라, 법령과 일치시켜 실무 혼선을 막고 행정 효율을 증대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중소기업 시책 및 육성계획의 수립 시기를 전년도 12월 31일까지에서 해당연도 1월 31일까지로 수정(안 제7조).

##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강상원)

###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진흥법’)에서 정하고 있던 중소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시기에 관한 조문이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중소기업법’)로 이관되면서 수립 시기가 변경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나. 관계법령 개정과 조례 현행화 필요성

- 시·도의 중소기업 육성계획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10월말까지 전달하는 기본지침에 따라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왔음(중전 중소기업진흥법 제62조의15).

## <최근 5년간 서울시의 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일 및 보고 현황>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육성계획 수립일	2019.04.01.	2020.03.30.	2021.03.22.	2022.03.11.	2023.02.17.
중기부 장관 보고일	2019.04.02.	2020.03.27.	2021.03.22.	2022.03.11.	2023.02.17.

※전체 실국별 계획 취합(2개월 이상 소요)으로 인해 매년 지연 제출됨.

- 그러나 코로나19와 대기업 이전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과 혁신 촉진이 필요해짐에 따라 중소기업진흥법에서 분리되어 「지역중소기업법」이 별도 제정(2021.7.27.)됨<sup>1)</sup>.
-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진흥법」 제10절(제62조의14부터 제62조의26까지)에서 정하고 있던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규정 전부를 ‘지역중소기업법’으로 이관하고 법체계를 정비면서 중소기업 시책과 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관계법이 「지역중소기업법」으로 변경됨.

### <「지역중소기업법」의 조문 이관 내용>

중소기업진흥법 제10절	지역중소기업법
제62조의14 (기본지침)	제5조 (기본지침)
<b>제62조의15 (육성계획의 수립)</b>	<b>제6조 (육성계획의 수립)</b>
제62조의16 (육성계획의 조정)	제7조 (육성계획의 조정)
제62조의17 (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제8조 (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제62조의18 (육성계획의 성과분석)	제9조 (육성계획의 성과 분석 등)
제62조의19 (공장설립 지원)	제28조 (공장설립 지원)
제62조의20 (지역협동기술향상)	제20조 (지역협동기술향상)
제62조의21 (인력개발 및 지역정착)	제29조 (인력개발 및 지역정착)
제62조의22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행정지원)	제19조 (지역중소기업 육성혁신 관련 주체에 대한 지원 등)제2항

1) 지역중소기업을 핵심 정책 대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독자적 법률이 없고, 정부와 시·도간 협력을 통한 체계적 육성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국회, 2020.11월.)

제62조의23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제24조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제62조의24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지원 등)	제25조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지원 등)
제62조의25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해제)	제26조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해제)
제62조의26 (향토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제30조 (향토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 법체계 정비에 따라 기본지침의 전달 시기가 10월 말에서 12월 말로 변경되고, 시·도지사의 중소기업 육성계획은 다음해 1월 말까지 장관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개선됨.
- 중기부 장관의 시·도지사에게 대한 기본지침 전달 시기를 12월 말로 변경한 것은 정부의 다음연도 중소기업 정책방향을 기본지침에 반영하기 위한 것임.
- 시·도지사의 육성계획 제출 시기 변경은 정부의 기본지침과 각 시·도의 예산 확정분을 반영하여 실효성 높은 육성계획을 수립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

### <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방식 비교>

구분	장관의 기본지침 수립 및 시·도지사 전달 시기	시·도지사의 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장관 보고
중소기업진흥법	당해 연도 10월 말	당해 연도 12월 말
지역기업법	당해 연도 12월 말	다음해 1월 말

- 개정안은 이런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중소기업 시책 및 육성계획의 수립 시기를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를 해당연도 ‘1월 31일까지’ 로 변경(안 제7조)함.

현 행	개 정 안
제7조(중소기업시책 및 육성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매년 12월 31일 까지 차기연도를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과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이하 "시책 및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중소기업시책 및 육성계획의 수립 등) ① ----- 1월 ----- 해당 ----- ----- ----- -----.

- 그러나 서울시는 중기부로부터 기본지침을 받은 후 육성계획 수립시 까지 2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되면서 최근 5년간 법적 보고 기한을 지키지 못함.
- 이는 육성계획의 수립에는 지역별 경제동향, 기업운영 현황 등의 실태조사를 비롯하여 자치구와 지역중소기업의 의견 반영 등의 절차가 소요되기 때문으로 육성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고 시점을 2월 말로 변경하는 법 개정이 요구됨.
- 한편 「지역중소기업법」의 시행(2022.1.28.) 이후 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자치법규 정비 등의 후속 입법 조치가 지연된 바, 추후 법 개정 사항이 신속히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함.

####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V.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재석위원 9명, 전원찬성)

Ⅵ.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Ⅶ.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인제 의원 발의)

의안 번호	800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5월 30일

발 의 자: 김인제 의원(1명)

찬 성 자: 김동욱, 김성준, 김원태,  
김지향, 남창진, 박승진,  
서상열, 신복자, 이숙자,  
이원형, 임규호, 임종국,  
장태용, 최민규, 한·신  
의원(15명)

## 1. 제안이유

-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시기가 상위 법령인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상 각 지자체에서 수립·제출하도록 규정한 시기와 서로 달라, 법령과 일치시켜 실무 혼선을 막고 행정 효율을 증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중소기업 시책 및 육성계획의 수립 시기를 전년도 12월 31일까지에서 해당연도 1월 31일까지로 수정 (안 제7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중 “12월”을 “1월”로, “차기”를 “해당”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